



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성차별 금지법

- 1 뉴저지주 차별 금지법(LAD)은 실제 또는 인식된 성별에 기초하여 고용, 주택 공급 및 공공 수용 시설(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의 학대와 차별을 금지합니다. 성차별에는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 성정체성이나 성표현, 또는 임신이나 모유 수유 상태에 기초한 차별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성별—여성, 남성, 간성, 성별 비순응, 또는 논바이너리 개인 포함—과 관계없이 직장, 주택 공급 및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 2 고용주는 실제 또는 인식된 성별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채용이나 해고, 승진, 급여, 또는 혜택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주로 맡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육아 휴직에 관한 규정을 직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 3 집주인은 세입자의 성별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거나 더 높은 집세를 부과하거나 남들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거나 보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 수용 시설은 성별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남들과 다른 서비스 또는 케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LAD는 또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성별에 기초한 학대를 금지합니다. 고용주, 주거 제공자, 공공 수용 시설에서 그러한 학대를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경우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편견에 기초한 성적 학대에는 직장 동료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끊임없이 내뱉는 것과 같이 특정 인물의 성별에 기초하여 상대를 무시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희롱—상대에 대한 적대적 표현, 비하하는 표현, 위협적 표현; 불쾌감을 주는 몸짓; 강제적인 성적 접촉; 및 원치 않는 성적 언어의 표현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5 고용주, 주거 제공자, 공공 수용 시설에서는 LAD에 따라 이러한 권리나 그 외 모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인물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gov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1.833.NJDCR4U**로 연락해주시시오



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JCivilRights.gov

 **DIVISION ON
NJ CIVIL RIGHTS**
@CivilRightsNJ #CivilRightsNJ #StandUpAgainstHate

